

소매 물가 조사지침

197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침 지 사 조 가 물 매 소

1977

— 차 례 —

1. 물가조사의 의의	3
2. 조사품목	6
3. 품질규격 및 단위	7
가. 품질규격	7
나. 품질규격 변경	8
다. 단위	9
4. 조사지역 및 대상처	9
가. 조사지역	9
나. 대상처	9
다. 대상처 선정 기준	10
라. 보조대상처	11
마. 대상처 변경	11
5. 조사시점	11
6. 조사방법	12
7. 조사요령	12
8. 품질품목처리	13
9. 조사표류 기입요령	14
가. 소매가격표	19

나. 영화관람료 확인서	15
다. 방세 조사표	16
라. 납입금 확인서	17
10. 조사표류 발송	17
가. 조사표 발송	17
나. 질의 조회 응신	18
11. 명부 작성	18
가. 가격 조사부	18
나. 대상처 명부	18
부 록	21
I. 품목 및 품질규격	21
II. 조사상 문제품목의 참고사항	43

1. 물가조사의 의의

오늘날의 교환경제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치는 화폐로서 표시되고 있다. 화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구매력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폐의 구매력이라 함은 화폐 한 단위가 교환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물자와 서비스의 수량을 의미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일차적으로는 단일상품의 가격에 의하여 측정할 수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일체의 상품의 가격을 종합함으로써 올바르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하여 특정의 개별상품의 가치를 화폐단위로서 표시된 것을 그 상품의 가격이라 하고 국민경제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것을 물가 또는 물가수준이라 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수준의 역수로서 표현되고 화폐의 구매력의 변동은 물가수준의 변동에 의하여 판정된다. 이러한 물가수준의 변동은 물가지수로서 표시되는데, 물가지수는 일정 시점의 물가를 기준 (= 100) 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물가를 백분율로서 표시한 것이다.

화폐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는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실질소득은 변동하게 된다.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 감퇴에 의하여 국민 경제생활은 궁핍하게 되고 반대로 물가지수가 하락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증가하여 국민경제생활은 풍족하게 된다. 결국 화폐소득에 대응하는 물가수준의 변동은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격은 상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거래 단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매 가격과 소매가격으로 구분되고 종합적으로는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로 구별된다. 도매가격이란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에 이르는 단계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며 거래 단계별로 몇 개의 도매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매상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하고 있는 도매물가지수를 위한 가격 자료로 쓰고 있는 도매가격은 제 1 단계의 거래에서 짐작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Primary market price) 을 의미한다. 소매가격은 거래의 최종단계에서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유통구조가 선진국과 같이 근대화되어 있고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제 1차 도매가격에서 최종 소매가격에 이르는 유통과정이 짧아지고 유통마진은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어 물가는 안정되어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나, 반대로 오늘날과 같이 유통구조가 복잡해지 무질서한 경우에는 거래단계별 가격질서가 문란하여 단계적 물가 수준의 변동은 정확히 포착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그만큼 국민 경제생활도 불안정하게 된다.

한편 소매물가라는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들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소비자가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이 종합된 것으로서 직

점 가계에서 지출한 수량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음에 반하여 후자는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가격소비지를 제정에서 상품구입을 위하여 지불하는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예전대, 가계류 등을 위시한 완전생산자에 있어서는 소매가격은 형성되나 가계에서 구입하는 소비자 가격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한편 서비스 요금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결국 소매가는 유통단계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고 소비자 물가는 가격소비지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 천제상의 실체적 필요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제, 공표하고 있는 서울 및 전 도시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용되는 가격자료는 소매가격 및 서비스 요금인바, 여기서 말하는 소매가격은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혹가)이 아니고 소매상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과 서비스 요금을 의미하고 그것은 개념상 소비자 가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수 편제에 있어서는 동질의 가격체열이 요구되는데, 소비자 구입가격만을 추적한다는 것은 동일 가구안에서의 소비지출의 품목과 구성비가 시계열 선상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조사기술면에 있어서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계속적으로 정확한 가격자료를 얻을 수 없으므로, 소매상의 판매가격과 소비자의 구입가격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서

편의상 소매가격을 포착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의 가격자료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소매가격자료는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상의 소비자물가에 접근하는 가격으로 조사 수집된 것이라야 한다.

현재 공표되고 있는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975년 기준의 지수 기준으로 가격의 비교 기준과 가중치의 기준을 1970년에서 1975년도로 변경하였고, 조사품목도 338 개 품목에서 349 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조사지역도 서울을 비롯한 32 개 도시에서 성남, 부천, 안양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35 개 도시로 확대되어 약 4,400 여 개의 대상처에서 가격을 수집하게 되었다.

2. 조사품목

도시가계 지출총 비중이 큰 품목으로서 지출구성비가 $\frac{1}{10,000}$ 이상되며 가격변동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349 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도 시 별 조 사 품 목 수

도 시	총품목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전 도 시	349	131	60	7	57	94
서 울	348	131	60	7	57	93
부 산	349	131	60	7	57	94

도 시	총품목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 비
대 구	348	131	60	7	57	93
인 천	347	130	60	7	57	93
대 전	346	130	60	6	57	92
광 주	345	130	59	6	57	93
전 주	344	130	59	6	57	92
춘 천	341	130	57	6	57	91
청 주	341	130	57	6	57	91
기타시	339	129	56	6	57	91

3. 품질규격 및 단위

가. 품질규격

- 1) 가격계열의 동질성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품목별 조사 가격의 결정적 요소인 품질규격을 확정시켜 계속적으로 동일한 품질규격에 의한 가격조사를 하여야 한다.
- 2) 상품의 질, 크기, 무게, 모양, 생산지, 상표 등 그 상품의 가격이 다양하므로 단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규격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규격

나)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규격

다) 생산량이 많은 규격

라) 시장출회가 많은 규격

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규격

바) 조사 지역별로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출회 소비되는 규격으로 상표를 지정한다.

나. 품질 규격 변경

이미 지정된 품질규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

『품질규격 변동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하고 신·구 품질규격의 가격을

3회 조사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고 계속
신가격으로 조사한다.

1)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2) 생산양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비닐봉지 제품이 캔 포장으로 된 경우)

3) 출회가 적어 가격의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4) 소비자 수요가 극소한 경우

5) 거래단위의 단위가 달라지는 경우

『예』(국수가 1근으로 거래되었던 것이 1kg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단위

소비자의 구매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를 책정한 것
이며 전국적으로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통일하였으니 거래 단위가 상
이한 지역은 규정된 단위로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예"

- 1) 600g으로 책정된 쇠고기 1근을 375g으로 판매하는 지역
에서는 600g으로 환산한 가격을 조사 기입한다.
- 2) 풍치의 단위가 10마리인데 6마리에 100으로 거래된다면 환
산하여 16.7원으로 조사기입하여야 한다.

4. 조사지역 및 대상처

가. 조사지역

서울을 비롯한 35개 시에서 조사한다.

나. 대상처

조사대상 전품목을 조사할 수 있는 점포 또는 사업체를 선정하
여 계속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상처 선정기준

- 1) 소비자 고객의 출입이 가장 많은 소매점포로서 가격의 대표성이 높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점포
- 2) 타조사원과 중복된 점포는 제외하여야 한다.
- 3) 하나의 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조사구역 내에서 대표적점포를 선정한다.
- 4) 다음과 같은 점포는 조사대상처가 될 수 없다.
 - 가) 도매점포
 - 나) 도산매 점포로서 도매를 주로하는 점포
 - 다) 통신 판매점
 - 라) 중고품 판매점
 - 마) 영업상태가 불량한 점포
 - 바) 중앙에서 지정하지 않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라. 보조 대상처

보조대상처는 지정된 대상처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격조사 를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대상점포의 특별한 사유로 이상가격이 형성되는 경우에 참고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정대상처 외에 몇개의 보조대상처를 정하여 활용한다.

- 1)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이 일시 품절일 때.

2)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의 품질규격이 달라졌을 때.

3) 지정된 대상처의 일시 휴업.

마. 대상처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처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에 송부하고
신구가격을 3회 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1) 조사대상처가 폐업하는 경우

2) 조사대상처가 전업하는 경우

3) 조사품목을 취급하지 않게 된 경우

4) 조사대상처의 상호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5) 조사대상처가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등원 때 신규대상처의 선

정은 대상처 선정 기준에 의함은 물론 치도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조사시점

가. 순기별 조사

(매월 5. 15. 25일) : (영화환급표, 납입금, 방세를 제외한

337품목)

나. 월별조사

(매월 5일) : 영화관람료 (2 품목)

다. 분기별 조사

(매분기 말일 5일) : 납입금 . 방제 (10 품목)

조사일에 공휴일 , 휴식일인 경우에는 조사일 전일에 조사하고 조
사일에 명절 (추석 . 성탄절 등) 인 경우에는 2일전에 조사하되 앞당긴
조사일이 휴식일 , 공휴일이면 다시 1일전에 조사한다.

" 예 "

- 1) 5일이 휴일이면 4일에 조사하고 4일이 명절이면 2일에 조
사한다.
- 2) 25일이 명절이면 23일에 조사하고 23일이 휴일이면 22일
에 조사한다.

6 . 조사방법

타계식 면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조사한다.

7 . 조사요령

소매 물가조사는 면접조사이므로 응답자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한 상태하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다만, 통계목적으로 사용될다는 점을 납득시켜 응답자로 하여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격을 알려 주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정한 응답자를 상대로 가격을 조사한다.

나. 각 매스콤을 통하여 사전에 물가에 관한 충분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항상 조사구내의 시황에 빠아야 한다.

라. 품질규격을 숙지함은 물론 유사품종에 대하여도 많은 지식을 갖는다.

8. 품절 품목처리

다음의 경우에만 품절로 처리한다.

- 가. 계절적으로 완전히 시장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 나. 생산이 중단되어 재고량이 품절되고 신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품절 처리하여서는 안되며 대상처에서 일시 품절일 때는 조사구내의 타점포에서 조사하여 등락이 있을 때는 본 대상처의 전준가격에 등락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채정하고 비교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예』 갈치값이 전기에 100원이었고 금기에 품절인 경우 보조대

상처에서 조사하여 동일규격이 120원이고 이 점포의 가격이 전기와 변동이 없다면 같은 100원으로 기입한다.

그러나 전기의 100원에서 120원이 되었다면 같은 추세로 보아 120원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본규격과 (70cm) 다른 규격의 갈치 (90cm)만 출회 되고 있을 때 전기 기본규격이 100원이고 90cm의 가격이 150원이었는데 금기가격도 150원이라면 금기조사 가격은 100원이다. 그러나 금기 90cm 가격이 180원이라면 등급비율을 같다고 보아 ($100\text{원} \times \frac{180}{150} = 120$) 120원이 금기 가격이다.

9. 조사표류 기입 요령

가. 소매 물가조사표

- 1) 조사가 끝나면 가격원부에 의하여 가격을 기하고 등락차액은 하락일 경우에만 차액앞에 △ 표를 하고 등락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 2) 환산가격을 기입할 때는 원미만은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그 내용을 비고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 3) 조사표의 숫자는 숫자란의 높정도 크기로 아래부분에 기입하고 정정 할 때는 지우지 말고 두줄로 획선을 긋고 날인한다.

2	3	5	6		△	2	0
					=2	=5	

4) 전국적으로 단일가격이 형성되는 전기료, 탑배 등 27 개 중앙 조사품목(비고란 ☆ 표)은 물가통계과에서 직접 조사하므로 조사표에 가격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5) 조사표가 작성되었으면 누락 또는 오기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재검토하여야 한다.

6) 맨 후면은 물가동향란에는 시황과 물가동향 및 기타 참고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나. 영화관람료 조사표

1) 극장명을 기입하고 개봉, 재개봉별로 해당란에 명기한다.

2) 품질규격에 맞는 영화명만을 기입하여 대작이나 흑백영화, 쇼는 제외한다.

3) 방화와 외화를 영화로 구별하여 금액을 기록하여 특히 합작영화는 방화로 기록하여야 한다.

4) 상영일자에 충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한다.

5)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영화요금(입장세 포함) 이외에 각종 구호금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포함되었으면 제외시킨다.

6) 1매의 조사표에 연기하여 조사한다.

다. 방세 조사표

- 1) 조사구 번호와 조사가구번호를 기입하고 반드시 가구주 성명을 기입한다.
- 2) 품질규격에 맞는 것만을 조사하여 방이 둘이거나 접포가 부설된 것은 제외시킨다.
- 3) 보증금과 매월 지불액란의 전기기격의 차오가 없도록 대조 확인하여 기록한다.
- 4) 전분기와 금분기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동락사유(새로 전입 또는 수리 등)를 명백히 기입한다.
- 5) 삭월세의 경우 보증금 잔액은 매월 지불액의 3배를 제한 금액임을 명심하여 정확히 기록토록 한다. 예컨대 50,000원 보증금에 5,000원의 삭월세(10개월)인 경우 다음 분기에는 보증금이 35,000원이 된다.
- 6) 세의 종류가 동일가구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히 전분기 가격에 차오가 없도록 한다. 예컨대 전분기에는 200,000원 전세로 있다가 금분기에 100,000원 보증금에 매월 5,000원씩 지불하는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에는 전세의 보증금란에 200,000원, 금분기에는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란에 100,000원 매월 지불액란에 5,000원을 각각 기록하고 그 변경사유를 동락사유란에 명백히 기재 한다.

7) 대상가구를 조사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라. 납입금 확인서

- 1) 소정 양식에 따라 기입하되 반드시 학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2) 국민학교 육성회비는 월별로 징수를 하지만 분기별 조사이므로,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록하며 등급의 총학비 100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3) 중·고등학교의 납입금은 반드시 2학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4) 중·고등학교 육성회비란의 A는 전액면제자, B는 전액납부자이므로 둘의 합계는 100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대학교 납입금은 자율적 경비의 내용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 시점마다 그 내역의 추가 또는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과계 (국문과 우선) 3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조사표류 발송

가. 조사표 발송

조사원은 조사시점 현재로 가격조사가 끝나면 지도원의 확인을 받아 즉시 조사표를 중앙에 우송하여야 한다. 가격보고는 신속을 요하므로 조사원의 일신상 사유로 지연되어서는 안되어 조사원 유고시에

는 지도원이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질의 조회 응신

1) 전화에 의한 질의나 질의조회 응신서를 접수하면 접수 즉시

내용에 따라 재조사한다.

2) 질의조회 응신기일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1. 명부 작성

가. 가격 조사부 (가격원부)

조사원은 우선적으로 가격조사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이를 휴대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품질규격 및 대상처 또는 지정 상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중앙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즉시 가격조사부를 청정 기입하여 조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상처 명부

1) 조사대상처 명부

서식에 의거 명부를 작성하되 품목 수의 합계가 당해 조사구의 조사품목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2) 품목별 대상처 명부

조사표상의 품목순서대로 기입하되 당해 조사구에서 조사하는
품목만 기입하므로 대상처별 명부의 품목총수 및 대상처수는 일치되어
야 한다. 대상처 명부는 2부작성하여 1부는 중앙에 송부하고 1부
는 조사원이 비치한다.

부 록
1. 품목 및 품질규격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10101	일반미	정미중품	8 kg	
10102	단연미	정부방출미	8 kg	☆
10103	혼합미	정부방출미	8 kg	☆
10104	참쌀	정미	8 kg	
10105	보리쌀	쌀보리	7.65 kg	
10106	밀	참밀	7.5kg	
10107	콩	빼태	7.5kg	
10108	팥	적두	8.33kg	
10109	녹두	흑갈색	8.33 kg	
10110	좁쌀	차조	7.89 kg	
10111	수수쌀	차수수	7.83 kg	
10112	밀가루	중력분 2등품, 계분율 77%, 22kg들이 (상표지정)	1포	
10201	쇠고기	정육	600 g	
10202	돼지고기	정육	600 g	
10203	닭고기	화이트종(우) 잡아서 털뽑은 것 내장제거 1마리 정도	1kg	
10301	조기	생선길이 30cm(우)	1마리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10302	잘 치	생선 몸길이 70cm 정도	1마리	
10303	생명태	생선 길이 45cm 정도 (우)	1마리	
10304	고등어	생선길이 35cm 정도	1마리	
10305	꽁치	생선길이 30cm	10마리	
10306	가자미	생선길이 30cm 정도, 폭 15cm 정도	1마리	
10307	대구	생선길이 65cm, 3.5kg 정도	1마리	
10308	명어	생선길이 25cm 정도	1마리	
10309	물오징어	생선 몸길이 25cm 정도	10마리	
10310	굴	싱싱한 것	375g	
10311	초개	껍질 깐 것, 싱싱한 것	375g	
10401	굴비	길이 30cm 정도	1두름	
10402	마른멸치	황백색 길이 5cm 정도	375g	
10403	마른오징어	몸길이 25cm 정도 (주문진산)	20마리	
10404	복어	황태길이 40cm 정도	1마리	
10405	새우젓	추젓	375g	
10406	멸치젓	완전히 삭은 것	375g	
10501	달걀	회색, 상한 개당 50g 정도	10 개	
10502	분유	서울분유 450g 들이	1통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10503	연 유	서울연유 397g 들이	1 통	
10504	목장우유	자지방 우유형동조합제품 180cc 들이 (고정배달)	1 병	
10505	버 터	서울버터 450g	1 개	
10601	무 우	재래종, 일없는 것,, 3개정도	3.75 kg	
10602	배 추	호배추 또는 촉음배추	3.75 kg	
10603	양 배 추	겉껍질 벗긴 것	3.75 kg	
10604	파	개량파, 머리 둘레 6cm 정도	3.75 kg	
10605	양 과	3개정도	375g	
10606	시금치	신선한 것	375g	
10607	콩나물	길이 5cm 정도	375g	
10608	상 치	잎 상치	375g	
10609	당 근	2개 정도	375g	
10610	오 이	개량종, 애오이, 길이 25cm 정도 (개당 120g 정도)	10 개	
10611	호 박	애호박 600g 정도	1 개	
10612	가 치	길이 25cm 정도	10 개	
10613	도마도	2개 정도	375g	
10614	감 자	흰색 25개 정도	3.75 kg	
10615	고구마	15개 정도	3.75 k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10616	도 라 지	껍질 벗겨 조개 것, 성장한 것	375 g	
10701	김	개량김, 겹정색	10 장	
10702	미 역	대장작(18 cm × 190cm 정도) (상 표지정)	1 장	
10703	다 시 마	밀린 것	375 g	
10801	고 추	제과종, 완전히 마른 것	600 g	
10802	고 촛가루	쫑가루(고봉)	0.2 ℥	
10803	마 늘	마른 것, 직경 5cm 정도	1 접	
10804	천 일 염	국산 1등염(고봉)	2 ℥	
10805	제 계 염	국산, 고운소금(고봉)	2 ℥	
10806	참 깨	회색	1 ℥	
10807	참 기름	공장제품	0.18 ℥	
10808	채 종 류	유채유	0.18 ℥	
10809	콩 기름	해표(동방유량), 폴라스틱병 900 ㎖ 들이 (KS 표시품)	1 병	
10810	들 기름	공장제품	0.18 ℥	
10811	설 텁	백설피(제일제당) 비닐포장 500g 들이 (KS 표시품)	1 포	
10812	규루타 밀 산 소 다	실선로표(미원) 비닐포장 100g 들이 (KS 표시품)	1 포	
10813	잔 장	샘표(진간장) 900 ㎖ 들이	1 병	
10814	고 추 장	샘표 캔포장 430 g	1 통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10815	된 장	비닐포장 500 g (상표지정)	1 포	
10816	생 강	10 개 정도	375 g	
10817	식 초	화영식초, 유리병 100 ml 들이	1 병	
10818	후춧가루	캔포장 100 g 들이 (상표지정)	1 통	
10901	두 부	150 g 정도 (공장제품)	1 모	
10902	라 면	삼양 쇠고기라면, 120 g 들이	1 봉	
10903	국 수	공장제품	375 g	
10904	당 면	순두발	375 g	
10905	단 무 치	왜 무우	375 g	
10906	마 아가 린	소머리표 (서울스노우 마아가린) 225 g 들이	1 개	
10907	소 시 치	마미소시지 (진주제품) 비닐포장 100 g 들이	1 개	
10908	생선통조림	꽁치 통조림, 425 g 들이 (상표 지정)	1 통	
10909	파실통조림	복숭아통조림, 425 g 들이 (상 표지정)	1 통	
11001	홍 옥	개당 180 g 정도	10 개	
11002	국 꽁	개당 200 g 정도	10 개	
11003	배	개당 450 g 정도	10 개	
11004	복숭아	백도, 개당 250 g 정도	10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11005	포 도	흑갈색	375 g	
11006	참	홍시, 개당 150 g 정도	10 개	
11007	곶 감	곶이당 10 개	1 곶이	
11008	밤	굵은 것 (고봉)	1 ㎏	
11009	밀 감	제주산, 개당 100 g 정도	1 개	
11010	바나나	수입품	375 g	
11011	참 회	온천참회 (나이론 참회) 개당 60 g 정도	10 개	
11012	수 박	개당 5 kg 정도	1 개	
11013	딸 기	개량종	375 g	
11101	크 릴 빵	삼립특제 단팥빵 65 g	1 개	
11102	식 빵	삼립식빵 800 g (비닐포장)	1 개	
11103	카스텔라	콘티 46 g (비닐포장)	1 개	
11104	전 빵	100 g 들이 (상표지정)	1 봉	
11105	드 르 스	롯데 다이아 캔디 80 g	1 봉	
11106	비 스 켓	오리온 귀염동이 비스켓 140 g 들이	1 봉	
11107	센 베 이	보통풀	375 g	
11108	캬 라 멜	롯데 하이소프트밀 크캬라멜 45 g	1 카	
11109	초 코 토크	레태 나하나 초코릿 28 g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11110	점	롯데 쥬시후레쉬 (6개)	1갑	
11111	크 랙 카	오리온 크랙카(동양제과) 60g	1봉	
11112	벽	인절미	600g	
11113	방 콩	볶은 것, 속껍질 있는 것 (고봉)	1ℓ	
11114	아이스크림	해태메 도글드콘 100cc	1개	
11115	아이스캔디	빙고 아이스바 60cc (상표지정)	1개	
11201	콜 라	코카콜라 190㎖ 들이	1병	
11202	사 이 다	칠성사이다 340㎖ 들이	1병	
11203	쥬 스	환타 355 ㎖ 들이	1병	
11204	코 오 피	다방 판매품	1잔	
11205	홍 차	다방 판매품	1잔	
11206	밀 크	다방 판매품	1잔	
11207	유산균음료	야쿠르트 64㎖ 들이 고정배달	1병	
11301	맥 주	오비 500ℓ 들이	1병	
11302	소 주	진로 25도 360㎖ 들이	1병	
11303	청 주	비화수복 특급 1,800㎖ 들이	1병	
11304	약 주	주류 판매점 판매품	1.8ℓ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위	비고
11305	탁 주	주류 판매점 판매품	1.8 ℥	
11306	포도주	진로포도주 33.5 ℥ 들이	1 병	
11401	설렁탕	1급 대중식당	1 그릇	
11402	냉면	1급 대중식당	1 그릇	
11403	비빔밥	1급 대중식당	1 그릇	
11404	짜장면	1급 중화요리점	1 그릇	
11405	우동	1급 중화요리점	1 그릇	
11406	짬뽕	1급 중화요리점	1 그릇	
11407	오므라이스	1급 대중식당	1 그릇	
20101	방세(전세)	책벽돌 또는 목조 기와집 부엌 있는 온돌방 1개	※	
20102	방세(월세)	"	1개월	
20201	도배지	벽지 중질지 3책 도 두루마리, 53 cm × 500 cm	1 팰	
20202	창호지	전주산, 기계지, 표백(20장)	1 권	
20203	비닐강판지	럭키 비닐제품 8자방 1칸용 0.8 mm, 122 cm × 485 cm	1 장	
20204	종이강판지	황색 4배지 105 cm × 90 cm 정도 (전주산)	1 장	
20205	시멘트	일반용, 40 kg 들이 (상표지정)	1 포	
20206	판유리	한국유리공업제품 투명, 두께 2 mm(1평)	918 cm ²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목 규격	단 위	비 고
20207	페인트	제비표(전설화학제품), 흰색, 유광, 의부용 1급품 4ℓ들이	1 통	
20208	합 석	별표(일신산업) #31(두께 0.23mm) 90.9cm×181.8cm 평판	1 장	
20209	스레이트	한국스레이트제품 두께 6.5mm, 72.72cm×181.8cm 석면, 조물(11.5) (KS 표시품)	1 장	
20210	합 판	나왕합판 90.9cm×181.8cm (3자×6자) 두께 3.6mm	1 장	
20211	벽 둘	적벽돌 21cm × 6cm × 9cm	10 장	
20212	기 와	시멘트제품, 겹정색 30.3cm × 30.3cm	1 장	
20301	은 수 저	성인용 70%는, 무게 75g 정도 젓가락포함, 단순무늬	1 별	
20302	스테인레스 수 저	성인용, 프레스제품, 젓가락포함 단순무늬	1 별	
20303	주 발	스테인레스제품 성인 남자용, 대접포함, 단순무늬, 두께 1.5mm (상표지정)	1 별	
20304	양 은 솔	직경 30cm 뚜껑포함(상표지정)	1 개	
20305	남 바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직경 18cm (상표지정)	1 개	
20306	접 시	직경 20cm 무늬단조(상표지정)	1 개	
20307	컵	보통풀, 유리제품, 1홀 7작들이 8개 (상표지적)	1 조	
20308	주 전 자	선학표, 황색 알마이트프레스 제품 2ℓ들이 (KS 표시품)	1 개	
20309	후라이팬	벌랑제품, 직경 25cm 정도	1 개	
20310	코오피세트	행남사, 은하수무늬, 유색 6별, 1등품	1 조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20311	버 컷	프라스틱제품 15ℓ 들이 뚜껑포함 (상표지정)	1 개	
20312	향 아 리	오지, 유광, 손잡이 달린 것, 뚜껑 제외 40ℓ 들이	1 개	
20313	세 솟 대 야	프라스틱제품, 직경 35cm (상표지 정)	1 개	
20314	밥 상	자개상(홍폐, 만무늬) 피나무, 45cm × 60cm × 28cm	1 개	
20315	거 을	45.5cm × 90.9cm (유리크기), 호 마이카테(폭 5cm, 두께 2cm) 유리두께 2mm	1 개	
20316	탁상시계	세이코(한국시계제품), 코로나형 (원형)	1 개	
20317	벽 시 계	" " 4P - 726 형	1 개	
20318	전기다리미	자동 열조정장치 부착 100V-450 W (상표지정)	1 개	
20319	백 열 등	투명 100V-30W 일반조명용 (상표지정)	1 개	
20320	형 광 등	번개표, 주광색, 갓제의 20W, 일반 조명용(KS 표시품)	1 개	
20321	책 상	철강제품, 의소매책상, 윗설합 2개 평축설합 2개, 1,065mm (W) × 760mm (D) × 750mm (H) (상표지정)	1 개	
20322	의 자	평의자(철제제품, 팔걸이 및 쿠션 있는것), 높이 45cm	1 개	
20323	자 전 거	3,000리호 표준형(26인치), 라 이트와 거울부착	1 대	
20401	텔레비전 수상기	금성사제품, VT 83-1C, 48.2 cm (19인치)	1 대	
20402	선풍기	금성사제품 FD 3518 H형 35.56 cm (14인치)	1 대	
20403	냉장고	대한전선 TEC TR 1603형 160ℓ	1 대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20404	라 디 오	금성사제품, RM 800, 휴대용(전천지 용) 214mm X 605mm X 193mm	1 대	
20405	전 축	별표 모델 - 5444	1 대	
20406	녹 음 기	금성사제품 모델 RE 503, 휴대용	1 대	
20407	미 셔	금성사제품 M - 1201형	1 개	
20408	파 아 노	삼익피아노, 호루겔 WG - 5 (전반 88개)	1 대	
20409	캐 비 벨	한국제품, 철강제 양복장, 양문, 안 설합 2개 (페인트 도장) 177cm X 96cm X 59cm.	1 개	
20410	재 봉 틀	드레스미싱, MSBD형, 특제실(무 광테이블)	1 대	
20411	난 로	금성사제품, SR 5060	1 대	
20412	폰 로	석유용량 4ℓ (상표지정)	1 대	
20413	전 화 기	M - 70형 다이알식, 흑색	1 대	
20501	수 도 료	가정용 전용전 월간 기본요금포함, 서울, 부산(30t) 대구, 인천, 대 전, 광주(25t), 그외(20t)	※	
20601	오토수거비	일반가정, 1등급	1 개월	
20602	인분제거비	" 18ℓ 들이	1 통	
20603	숙박료(호텔)	홀류, 듀방, 침대, 1인 1박, 독탕부 설 식사제외	1 일	
20604	숙박료(여관)	1류, 1인 1박, 듀방, 식사제외	1 일	
20605	전 공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20606	쪽 수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20607	미장이 임	" "	1 일	
20608	칠 장이 임	" "	1 일	
20609	잡 부 임	급식제외	1 일	
30101	전 가 료	가정용 (기본요금 및 세금포함)	30 KWH	☆
30201	연 탄	소형 22공탄 직매점 판매가격 (배달료 제외) (상표지정)	10 개	
30202	가 스	유공제품, 가정용, 프로판가스 (배달료와 통값제외)	10 kg	
30203	숯	참나무 숯, 흑탄	100 g	
30204	석 유	유공제품, 등유	2 ℥	
30301	성 낭	가정용 대형 8각형 750~800개 파들이 (상표지정)	1 통	
30302	양 초	6개들이, 갑당 300g 정도 (상 표지정)	1 갑	
40101	마춤신사복 (여름용)	제일모직, 트로피칼 (율 40%, 폴 리에스터 60%) 인천반침	1 벌	
40102	마 층신사복 (겨울용)	제일모직, 순모복자 (해링본) 52 s/2 인 견반침	1 벌	
40103	마춤숙녀복 (여름용)	선경직물, 스카이 본디합 선직물 팔 없는 원피스, 나이론다후다 반침	1 벌	
40104	마춤숙녀복 (겨울용)	선경직물, 범표 메리 calam 겨자울 100% 투피스, 나이론 다후다 반침	1 벌	
40105	마 춤코트	제일모직, 슈퍼코트, 남자용 윤 40% 폴리에스터 60% 인천반침	1 벌	
40106	마 춤오바	경남모직, 여자용순모, 친 철라, 인천반침	1 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번 호	단위	비고
40107	기성신사복 (여름)	율 40%, 폴리에스터 60% (한국 양복 총판)	1 벌	
40108	기성복신사복 (겨울)	율 40%, 폴리에스터 60% (한국 양복 총판)	1 벌	
40109	한복	성인 여자춘추용, 스카이론 상하각각 3겹 (통사야에, 망사집), 기성복	1 벌	
40110	학생복 (여름용)	남자 중학생용, 상의는 TC (65% 폴리에스터 35%면) 하의는 T·R (50% 폴리에스터, 50% 레이온) 기성복 4호	1 벌	
40111	학생복 (겨울용)	남자중학생용, 에리트 (제일합섬)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1 벌	
40112	아동복	나이로나온다 반팔 기성복 4호 흑색 베드론 반팔일피스, 유색 기성복 (8~9세용)	1 벌	
40113	잠바	카시미아, 춤추용, 성인 남자용, 작크부착, 칸활, 나이론 다운다 한발침 기성복	1 대	
40114	긴팔 와이셔츠	뉴크라운 PPP (폴리에스터 65% 면 35%) (신세계 복장)	1 대	
40115	반팔 와이셔츠	뉴크라운 (폴리에스터 65%, 면 35%) (신세계 복장)	1 대	
40116	남방셔츠	남자 성인용 반소매, 폴리에스터 100%, 유색, 기성복	1 대	
40117	면내의	남자 성인용, 겨울용상. 하 38 s 무색 (상표지정)	1 벌	
40118	화학사내의	남자 성인용, 겨울용 상. 하 무색 폴리에스터 100% (상하지정)	1 벌	
40119	런닝셔츠	남자 성인용, 반팔 38 日 화색, (상표지정)	1 대	
40201	팡복	면 16 s × 16 s 폭 88.9cm 표백 안迨것 (1마) (상표지정)	91.4cm	
40202	포플린	면 30 s × 30 s, 폭 111.76cm, 날염 (상표지정)	91.4cm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40203	이 블	실크 원단, 한일샤넬 (2 kg 정도) 2인용(한일합침)	1 장	
40204	나이론데 피터	나이론 100 %, 70 테니엘 폭 44 인치 (111.76 cm) 유색	91.4 cm	
40205	재 봉 사	면 100 %, 30S / 3 겹이 5,000m 흰색 (상표지정)	1 권	
40206	화 학 사	한일합섬, 아크릴 100 %, 20 s/2 폐물용, 유색	453.6 g	
40207	솜	면, 지대포장, 3kg들이, 흰색 (상표지정)	1 포	
40301	마춤남자구두	복수형, 나이론창, 나이론굽, 검은 색	1 켤레	
40302	마춤여자구두	합성피혁 (크라리노 칠피혁) 나이 론창, 프리스틱굽	1 켤레	
40303	남자 고무신	말표, 흰색 260mm 은하수 (KS 표시품)	1 켤레	
40304	여자 고무신	말표, 흰색, 흰 바닥 230mm, 9000 페어 (KS 표시품)	1 켤레	
40305	운 동 화	말표, 남학생용, 면직, 흑색, 스파 이크형 230mm	1 켤레	
40306	비 신	말표, 남자 성인용, 반장화, 흑색고 무제품 260mm	1 켤레	
40307	비 널 화	왕자표, 합성피혁, 고무창, 빛색 260mm	1 켤레	
40401	남자 양 말	성인용, 추동용, 나이론 20 %, 율 30 % 베드론 50 % 단색(상표지정)	1 켤레	
40402	여자 양 말	추동용, 나이론 100 %, 단색 (상표지정)	1 켤레	
40403	아동 양 말	추동용, 카바양말, 나이론 100 % 단색 (8 - 9세용), (상표지정)	1 켤레	
40404	스 타 킹	반달표, 살색 나이론 100 % 8분 (등 느, 뒷줄었음)	1 켤레	
40405	허 리 띠	소가죽(속피) 무쇠장식, 폭 2.5 cm 정도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40406	장갑	면사 23S 흰색, 작업용 중품	1켤레	
40407	넥타이	동아견직, 폴리에스터 50%, 아세테이트 50% 최신형	1 매	
40408	미플러	남자 성인용, 본면 40S 단사 (110cm×30cm) 중품	1 매	
40409	모자	중고교생용, 율 70%, 나이론 30% 방모사 나이론 안발침, PVC챙	1 개	
40410	가방	남자 주학생용, 100% PVC 면 진착(스폰지식)	1 개	
40411	모포	한일합섬, 일반울纶모포 바탕은 면 30% 아크릴 70% 170cm×220cm	1 매	
40412	수건	면 23S, 80cm×32cm 정도, 유 색, (상표지정)	1 대	
40413	우산	협립제품, 흠살 10개, 2단 헤드 론, 깔은색	1 개	
40414	양산	협립제품, 흠살 10개, 2단 코롱 (나이론 100%) 유색	1 개	
40415	손목시계	오리엔트 19석, 남자용, 카렌다형 방수수동태열 스테인레스케이즈, 국내조립품	1 개	
40416	금반지	순금(99%) 3.75g 무늬단조 (수공임 포함)	1 개	
40417	핸드백	비닐제품, 최신중형 보통장식, 단색(상표지정)	1 개	
40418	안경	남자 보안용, 국산테(세루로이드 6mm) 국산알(슈퍼겔) 갈색	1 개	
40501	양복세탁료	신사복 상.하 드라이 크리닝 (다림질 포함)	1 회	
40502	와이셔츠 세탁료	메드론 제품(다림질 포함)	1 회	
40503	재봉료	부인용, 춘추용 한복(화학사 옷감 3겹), 수공임	1 병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40504	의복수선료	신사복, 짜접기 3cm 정도	1 회	
40505	신수선료	남자구두, 1켤레, 뒷창수선료(재료값 제외)	1 회	
40506	구두닦이	남자용 단화, 검정색 보통광택	1 회	
50101	영양제	비타엠(유유산업) 100정들이	1 병	
50102	감기약	노바킹 당의정(동광약품) 10정들이	1 병	
50103	소화제	부체포 활명수(동화약품) 60mℓ 들이	1 병	
50104	항생제	테트라싸이클린(중근당제약) 250mg	10캡슐	
50105	해독강장제	박카스 D(동아제약) 100cc들이	1 병	
50106	구충제	버박스(유행양행) 6정들이	1 잡	
50107	의상약	마크롬액 15cc들이	1 병	
50108	진찰료	종합병원, 보통진료	1 회	
50109	입원료	종합병원 일반환자 2인용(식사 포함 약대제외)	1 일	
50110	분만료	종합병원 2박3일 2인용실 입원, 경산, 정상분만(식사포함, 약대제외)	1 회	
50111	엑스레이 촬영료	종합병원, 흉부, 직접 보통, 단순 촬영(14인치×14인치)	1 회	
50112	인삼	금산삼 50평(1등품:松) 300g	1장자	
50201	화장비누	다이알비누 동산유지 100g	1 개	
50202	세탁비누	일반 가정용, 4호 550g(상표 지정)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50203	가루비누	레키하이타이, 비닐포장 100g들이	1 포	
50204	치약	레키치약, 100g들이 (중형)	1 개	
50205	칫솔	레키 777 성인용 (케이스포함)	1 개	
50206	화장크림	모노바 바니싱크림 6.0g (태평양화학)	1 잡	
50207	화장분	모노바밀크화운데이션 35g (태평양화학)	1 잡	
50208	화장수	쥬단락 엘 밀크로숀 130ml (한국화장품)	1 병	
50209	포마드	쥬단락 포마드 70g (한국화장품)	1 잡	
50210	화장지	장미표 특제 (원통형), 흰색	1 개	
50211	살충제	에프킬러 에어로졸 (삼성제약) 수압분무식 300ml들이	1 통	
50212	면도날	도루코 (한일공업) 10매	1 잡	
50213	이용료	성인 (착유포함) 중류	1 회	
50214	고메료	성인 여자 (가발, 칫트로 제외) 중류	1 회	
50215	파마료	성인 여자, 보통파마 (B급) 중류	1 회	
50216	독육료 (성인)	남자, 일반 대중탕	1 회	
50217	독육료 (아동)	일반 대중탕 (7세이하)	1 회	
50301	시내버스료	성인, 시내 1구간	1 회	
50302	시외버스료	포장도로, 일반여객	1 km	☆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50303	고속버스료	서울-각 도시간, 성인, 평도	1회	☆
50304	택시료(기본)	시내, 기본요금(2km)	1회	
50305	" (초과)	2km 초과요금	1회	
50306	기차료(완행)	대인 40km	1회	☆
50307	" (급행)	대인, 보통급행 40km	1회	☆
50308	항공료	대한항공, 서울-도시간 성인 평도	1회	☆
50309	선박료	국내 여객운임, 성인, 3등실 20 해리	1회	☆
50401	전화료(기본)	가정용 1대, 시내 통화료	1개월	☆
50402	" (도수)	가정용, 시내통화료	200회	☆
50403	우편료(국내)	통상우편 1종(필서봉서, 20g 이내)	1통	☆
50404	전보료	시외, 보통, 10자이내	1회	☆
50405	우편료(국제)	항공서간	1통	☆
50501	국민학교교 과서	4학년 1학기용, 국어, 산수, 사 생, 자연	※	☆
50502	중학교교과서	영어(중1미들스쿨) 수학(중1 중등수학, 이성현 저)	※	☆
50503	고등학교교 과서	영어(고1하이스쿨) 수학(고1현 대공통수학-이성현 저)	※	☆
50504	국민학교 육성회비	자구당 1인 재학생분	1개월	
50505	납입금(공중)	2학년생	1분기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50506	납입금(사증)	2 학년생	1분기	
50507	" (공고)	2 학년생	1분기	
50508	" (사고)	2 학년생	1분기	
50509	" (국내)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 문과계 3학년생	1학기	
50510	" (시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계 3학년생	1학기	
50511	" (전문)	기계과 4학년생	1학기	
50512	유치원비	보육료 및 기성회비	1개월	
50513	참 고 서	엣센스 영한사전 (민중서관) 3×6 판 인도지, 비닐포지, 1,680페이 지	1권	☆
50514	임시학원비	대학 임시준비, 영어단파반 1일 100분 강의 보통강사수강료	1개월	
50515	자동차학원비	지정 자동차학원, 본과 영업반 10 주과정 수강료 (입학금, 책값, 면 허수수료 제외)	1개월	
50516	양재학원비	재단과, 4개월 과정 수강료 (입학 금 제외)	1개월	
50517	도서관비 (국공립)	성인, 일반 열람실	1회	
50518	도서관비 (사설)	학생, 일반 열람실	1일	
50601	볼펜	모나미 153, 청남색 KS 표시품	1개	
50602	연필	풀화면필 사파이어 HB 향나무 (지우개부착)	1다스	
50603	만년필	파일롯트 S-A형.	1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50604	노트 (대)	모조지 48매 (표지포함) 18.6cm × 26.5cm (상표지정)	1 권	
50605	" (소)	모조지 14매 (표지포함) 14.5cm × 20.5cm (상표지정)	1 권	
50606	도 화 지	바니라지 (45.4kg) 1면 사용, 수채 화용, 8절지	1 장	
50607	시 험 지	경지 16절지	20 장	
50608	봉 투	모조지 제품, 흰색	10 장	
50609	크 레 파 스	모나미 왕자표, 긁은파스 (6cm정 도) 22색들이	1갑	
50610	잉 크	청색, 파일롯트 잉크 30cc 들이	1 병	
50701	신문구독료	한국일보, 가정배달	1개월	☆
50702	주 간 카	주간한국, 32면	1 부	☆
50703	여 성 카	주부생활 (당월분)	1 권	☆
50704	대 중 카	아리랑 (당월분)	1 권	☆
50705	아 동 카	소년중앙 (당월분)	1 권	☆
50706	종 합 카	선동아 (당월분)	1 권	☆
50707	문 예 카	현대문학 (당월분)	1 권	☆
50708	영화관람료 (방 화)	총천연색, 상영시간 100분정도 입장세 포함 (각종 구호금 제외)	1 회	
50709	영화관람료 (외 화)	" "	1 회	
50710	텔 레 비 전 시 청 료	1대	1개월	☆
50711	고 중 입 장료	고궁 및 유원지, 성인	1 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격	단위	비고
50712	사 진	명함판, 흑백 3~4매 (상류사진판)	1 조	
50713	흑백필름	대한필름 폭 35mm 20장 촬영용	1 통	
50714	칼라필름	코닥칼라 20장 촬영용, 35mm 국내제본	1 통	
50715	장 난 감	유색, 고무공, 직경 18cm 정도	1 개	
50716	삼륜자전거	어린이 4~5세용, 1인용, 보통 장식	1 대	
50717	운동기구	축구볼, 보급용 (중앙구), 소가죽 32피	1 개	
50718	레코드판	LP형, 지름 30cm, 스테레오, 국 내 일류가수 신곡 최신취입	1 장	
50719	생 화	국화꽃 상상한 것 직경 5.6cm	1 송이	
50801	담 배	작종련	감	☆
50901	행정수수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1 통	
50902	행정수수료 (호적초본)	호적초본 발급	1 통	
50903	행정수수료 (인감증명)	인감증명 발급	1 통	

II. 조사상 문제 품목의 참고사항

쌀~상품과 중품을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대상처별로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계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 품질 규격을 조사할 것.

어개류~생선의 길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알아 두었다가 중량 단위로 판매하는 대상처의 올바른 가격을 포착할 것이며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중량을 중심으로 가격을 환산할 것.

목장우유~협동조합에서 고정적으로 배달하여 주는 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제과점이나 일반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미역~지역별·산지별로 가격이 상이하나 반드시 규격을 확인한 후에 조사할 것.

마늘~규격에 맞는 접당 무게를 확인하여 조사할 것.

예컨대 3.75kg(1판)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접당 무게를 파악하고 있어야 환산이 가능함.

곶감~반드시 곶이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할 것이며 젖으로 둉어서 포장한 것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과자류~항상 상표와 중량을 확인하여 조사할 것이며 특히 감량에 유의하여 그 사유 및 가격을 정확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밀크~목장 우유와는 구별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약 주 ~ 용기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병술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방 세 ~ 방세조사의 대상은 방이므로 가구주의 변동이 있어도 대상자는 변동되지 않으며, 세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대상가구를 변동하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동일한 방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경우나, 전세가 월세(보증부월세, 삵월세, 월세)로 변경되어도 대상자는 변동되지 않으며 변동된 사실을 그대로 기입하여 보고한다.

즉 A가 전세로 200,000원에 세들어 있다가 전출하고 B가 250,000원에 전세 입주하면, 조사표에는 가구주 성명을 B로 기입하고 50,000원 인상된 것으로 보고 동락사유란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사실을 기입하여, 200,000원 전세로 있던 A가 보증금 100,000원에 월세 5,000원으로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는 전세 200,000원으로 기입하고, 금분기에는 보증부월세란에 보증금 100,000원 매월 지불액 5,000원으로 기입하고 동락사유란에 세의 종류변경을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주리비, 시설비, 기타 영선로 부과징수는 제외된다.

오물수거비 ~ 지방별로 1등급(월수입, 재산세, 전평등 택일)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호텔료~율류란 외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관광호텔이 아니고 내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호텔을 말한다.

연 탄～가정용 소형 구멍탄으로서 적체점 절두가격을 조사한다.

배달료는 거리의 원근 및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가격에서는 제외된다.

남자구두～복수혁이라 함은 인조합성 피혁이 아닌 우파를 말하며 가성화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비 신～단추나 작크가 부착 되지 않은 반장화를 조사하여야 한다.

손목시계～남자용 오리엔트 19석으로서 요일과 날짜가 나오는 것으로(카렌다형) 수동이며 국내 조립품을 조사한다.

금반지～순도(99%)를 유지하며, 수공입을 포함하므로 단순한 무늬가 있는 것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수공입의 변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복류～피복 및 창신구는 유행에 민감하므로 특히 상표, 원료의 성분(수, 데니엘, 혼방의 경우 혼합비율등) 색채, 형태 등에 항상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수(手)와 데니엘(Denier)은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는 면직·모직물에 데니엘은 생사·나이론 직물에 사용된다.

수(s)～면직물의 경우는 원면 1파운드(453.6g)로 길이 840야

드(YDS)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하며,

모직물의 경우는 1kg의 원모로 1,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금기를 말한다.

데니엘~나이론 섬유 1g으로 9,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금가를 말하며, 생사 450m 무게가 0.05g 일 때 1데니엘이라 한다.

진찰료~전문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보통 초진료를 조사한다.

따라서 특진료, 재진료를 조사해서는 안된다. 이하 입원료, 분만료, 엑스-레이 촬영료도 같은 종합병원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입원료~일반환자란 응급의 특수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아니며,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배급하는 식사는 포함하되 병원에서 별도로 계산하는 약값은 제외한다.

분만료~경산이란 초산이 아닌것을 말하며, 정상분만이란 특수진료를 요하지 않은 경우이고 따라서 특별히 투입되는 약값은 제외되며, 다만 저혈세 등 분만료와 별도로 계산되지 않고 모든 산모에게 일률적으로 투입되는 약값은 분리 포착하기가 곤란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2박 3일 입원이란 평상적인 산전, 산후 처리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입원료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간혹 전문병원에 따라서는 남아, 여아의 분만료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종합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으며, 만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다면 남아분만에 대한 산모측의 텁으로 간주하여 그 차액은 고려될 수가 없다.

이용료~종류라 함은 관광호텔 등의 특수 이발소가 아닌 일반 이발소를 말하며, 보통의 착유를 포함하여 특수 서비스(손톱손질, 맷사아

지 등)로 인한 팀은 해당 업소가 이용료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고려될 수 없다. 이하 미용료도 같다.

목욕료~터키탕, 사우나드크 등 특수 목욕탕이 아닌 일반 대중탕을 조사대상으로 남자 목욕료를 조사하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 7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나, 지방에 따라 성인, 아동, 유아를 각각 구별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가장 가까운 요금을 조사한다.

예컨대 13세 이상을 성인, 6~12세 까지가 아동, 5세 이하가 유아로 구분되면 유아의 목욕료를 조사하며, 10세 이상을 성인, 5~9세 까지가 아동, 4세 이하가 유아이면 아동의 목욕료를 조사한다.